

● 비상장사 공시 위반 29개사에 대해 과태료 1억3천만원 부과

비상장사 31개사와 22개 기업집단 대표회사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33개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45개 대표회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공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 이후 도입된 기업집단현황공시의 경우, 2009년 7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번째 점검에 해당한다.

공시 이행 점검에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점검 결과, 7개 기업집단 소속 54개사 75건의 공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29개사의 34건의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1억 3,198만원을 부과하고, 31개사의 41건의 위반 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한 것.

기업집단별로는 삼성이 총 15개사에서 22건을 위반해 가장 많았고, 에스케이 12건(11개사), 현대자동차 12건(9개사), 롯데 11건(9개사) 등이었다. 회사별 평균 위반건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4.5건(2개사, 9건), 삼성 1.47건(15개사, 22건), 현대자동차 1.33건(9개사, 12건) 순이었다.

기업집단현황공시 점검 결과로는 22개 기업집단 대표회사의 37건 공시위반사항에 대해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기업집단현황공시 의무 위반행위는 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제도 시행 첫 해로 점검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계도를 통한 제도 정착인 점과 공시대상 회사들의 범위반이 고의보다는 대부분 새로이 도입된 제도에 대한 미숙이나 무지로 인한 점 등을 감안해 일괄 경고 처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위반회사별로는 대한전선과 한국가스공사가 4건을 위반해 가장 많았고, 에스케이와 엘지는 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비상장사공시 제도가 도입된 2005년 4월 이후 매년 공시이행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위반 회사의 비율 및 평균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기업집단별 대표회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 이후 사후감시 강화를 위해 도입된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의 조기 정착과 기업집단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에 공시대상 회사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 점검 등 사후 감시를 강화하고, 공시 점검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4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기업집단 소속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점검부터는 위법행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명령 등 시정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 제도의 목적인 시장에서의 사후 감시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향후 범위반 방지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원장,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광주소촌산업단지 산업현장 방문

간담회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동반성장 위한 정부 의지 표명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동수 위원장이 3월 25일 홍재형 국회 부의장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산업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중소기업 대표 18명과 중기중앙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지역본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3월 30일에는 광주소촌산업단지내 산업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중소기업 대표 10명, 중기중앙회 지역본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중소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9월 29일 마련한 동반성장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를 표명하고, 지난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못지않게 대기업의 자율적인 행태 및 문화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확산하고 대기업 임원 평가에 동반성장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주요 대기업 CEO 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식 전환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동반성장이 산업생태계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중소기업계도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투자 확대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각 지역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올해 지난 2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0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18일 온수산업단지 14개 중소기업과 간담회에 이어, 이번 오창과학산업단지와 광주소촌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5월 중 대구·경북, 부산·경남지역 현장 방문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문화 뿌리내리도록 공정위 역량 집중

56개 대기업 협약 체결 4월까지 마무리·15대 대기업 총수와 연쇄 간담회 추진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3월 28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선진적인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위 역량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문화 확산에 집중할 방침임을 밝히고, 이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간 경쟁 패러다임이 기업 생태계간 경쟁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반성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이라며 “대기업 CEO와 총수의 인식이 전환되어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이 기업문화로 확산되고 중소기업도 자기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만 선진적 대·중소기업 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구체화 시켜 나갈 공정위의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먼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수평적·수직적으로 확산하고, 평가기준도 기업의 구체적인 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문화 확산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3월 29일 현대차 그룹 6개사의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4월 말까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56개 대기업의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협약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고 협약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 절차 기준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를 위해 3월 31일에는 대기업과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개정 협약기준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관계 부처 협의체인 ‘두레넷’ 회의 등을 통해 협약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공정위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책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공정거래 문화 확산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정거래문화 확산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4월 중순부터 전기·전자, 건설, 유통 등 6개 분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이버 커뮤니티 형태로 운영하지만 업계 핵심 이슈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회의도 병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모범 관행 공유 및 업계 애로사항 파악 등 통상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공정위의 동반성장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이 기업문화로 체화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총수의 역할이 절대적인 점을 감안해 상반기 중 15대 대기업 총수와 연쇄 간담회를 추진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대기업 CEO 간담회, 중소기업 현장방문·간담회,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등을 통해 느낀 점과 대기업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대기업 총수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4월에는 중기중앙회, 업종별협동조합 대표 등과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부산·대구 중소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와 함께 전경련, 중기중앙회,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동반성장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도입 등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11년 4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안)한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조합의 대금 조정신청 관련 '불가피한 사유 및 신청 요건·절차·방법 등'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규정 △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기간(30일) 이전에도 하도급분쟁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 규정 △ 하도급대금 감액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기술자로 요구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 등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통해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6월 30일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 <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하도급거래 상습 범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상습 위반한 20개 사업자 명단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하도급거래 상습 범위반 사업자 20개 업체를 선정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별점 부과기준 및 경감기준을 적용해 최종 20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선정 사업자의 주요 범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순이었다.

공정위는 상습 범 위반사업자로 선정된 20개 사업자의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의 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2011년 4월 28일부터 2012년 4월 27일까지 1년간 게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하도급법을 개정해 하도급거래 상습 범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상습 범위반사업자를 선정해 공표하게 된다.

상습 범위반사업자 선정 기준으로는 금년 기준으로는 과거 3년간(2008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별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다.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기준' 개정안 설명회 개최

대기업 참여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 돌아가도록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3월 31일 오후 공정위 대강당에서 실시한 설명회에는 동반성장지수 대상 기업 56개를 포함한 대기업과 협력사의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기준' 개정안은 대기업의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협약 절차기준 및 배점을 조정했다.

실질적인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행실적에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이행실적 점수 49점 → 65점)했으며, 대기업의 자율적인 협약 참여를 유도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협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협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기업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가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협력업체간 협약 체결 유도 및 동반성장 우수 협력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행위 등에 대한 배점을 대폭 상향(3.5점 → 15점)했다.

대기업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 운영, 위탁정보 사전통보시스템 구축 등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사항 점수도 상향 조정(5점 → 7점)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선진적 제도 도입을 확대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과 협약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규정 등을 신설했다.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한 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협약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조항에 동반성장지수 산정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으며,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협약 평가 점수와 협력사 명단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사회적 물의'에 따른 감점 조항을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따른 감점으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제한적으로 규정했으며, 허위 자료 제출 또는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에 대한 조치 규정 개선, 그리고 범위반 전력에 따른 감점 규정의 경우는 협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평가 완료 후에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협약평가를 재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소급 재조정하는 등 협약기준을 개선했다.

● 공정거래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김동수 위원장 “경쟁문화 확산이 가장 큰 성과, 향후 정책기능 강화 필요”



사를 전했다.

이어서 김동수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와 동반성장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병일 전임 부위원장이 ‘공정위 30년 회고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일 공정위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오전 9시 대강당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위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자체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임 위원장이었던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제도가 한 세대에 걸쳐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통합하는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을 거듭했다”면서 축

● 공정거래 30주년기념 체험수기·온라인콘텐츠 공모 통해 20편 선정

‘알뜰맘! 살뜰샘의 행복한 소비 이야기’ 공정위 체험수기 대상 영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3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체험수기 및 온라인콘텐츠 공모전’에서 20편의 수상작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상작 중 체험수기 일반부에서는 ‘알뜰맘! 살뜰샘의 행복한 소비 이야기’라는 주제로 합리적인 소비자로서의 노하우를 제시한 이규인씨를 대상 수상자로, ‘남송리에서 쏘아올린 작은 희망’이란 주제로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참가 체험을 통해 공정한 경쟁시장의 필요성 등을 표현한 하태인씨와 ‘음료시장 담합 적발을 통해 본 시장경제’란 주제로 응모한 김경원씨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체험수기 학생부에서는 케이블 TV 음악순위 프로그램의 유료 모바일투표 집계방식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 사례로 응모한 대상 수상자인 김현우군을 비롯해 5명의 수상자를 선정됐다.

온라인 콘텐츠 일반부에서는 호두리와 곰두리를 캐릭터화해 담합·기만광고 등의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플래시로 표현한 김세형씨를, 학생부에서는 공정위의 주요업무를 감각적인 영상으로 표현한 김주현군을 각각 대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들은 공정위 블로그 <http://kftc.tistory.com>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게 된다.

● '공정거래 30년' 기념 공동학술 심포지엄 개최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 관련 전문가들 약 350여명 참석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경쟁 및 소비자 정책의 30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30년 기념 공동학술 심포지엄'을 4월 4일과 5일 이틀간에 걸쳐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정위와 관련 학회·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경쟁정책부문은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그리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LEG가 함께 했다.

소비자정책부문 역시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기조연설과 함께 학계·법조계를 비롯한 삼성, SK, 롯데, 두산, 동아그룹의 기업인들까지 약 350여 명이 참석해, 지난 3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의제 및 주요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쟁정책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위 법집행 30년을 경쟁법적 관점에서 실체법적, 조직·집행절차법적으로 고찰해보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위 법집행 30년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 등을 고려해 분석했으며, 세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집행자로서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정거래제도의 향후 정책방향 및 새로운 도전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모색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소비자정책교육학회 주관으로 공정위의 소비자정책의 운용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해보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주관으로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지난 30년간 경쟁법 집행 경험을 학계 및 재계와 공유해 공정위에 누적된 실무 경험과 학계의 전문적 이론의 긍정적 선순환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55개 지정

지난해 53개 기업집단보다 2개 순증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5일,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55개 기업집단 1,554개사를 2011년도에 상호출자가 제한되고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지난해 53개 기업집단보다 2개 순증했다.

한국석유공사, 대우건설, 대성, 태광, 유진 등 5개 기업집단이 신규 지정됐으며, 현대건설,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현대오일뱅크 등 3개 기업집단은 지정 제외됐다.

201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업집단 수가 2개 순증했지만 자산순위의 변동 등이 가장 적었다.

대성(73개), 태광(50개), 유진(33개) 등 계열회사 수가 많은 집단이 신규 지정되는 한편, 기존집단 내에서 현대건설 기업집단이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으로 편입됐다.

대우건설이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되기도 했다.

〈 2011년 기업집단 유형별 지정 현황 〉

구 분	민간 기업집단(4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8개)
	총수 있는 집단 (38개)	총수 없는 집단 (9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55개)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알지, 롯데, 현대중공업, 지에스, 한진, 한화, 두산, 금호아시아나, 에스티엑스, 엘에스, 씨제이, 신세계, 동부, 현대, 대림, 부영, 케이씨씨, 동국제강, 효성, 오씨아이, 현대백화점, 한진중공업, 웅진, 코오롱, 영풍, 현대산업개발, 대한전선, 동양, 미래에셋, 하이트진로, 대성, 세아, 한국투자금융, 태광, 유진	포스코,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대우건설, (에스-오일), (한국지엠), (홈플러스), 케이티엔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201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평균 자산총액은 전년 대비 약 10% 정도 증가했다. 55개 기업집단의 평균 자산총액은 30.7조원으로 2010년 53개 기업집단의 평균 자산총액 27.8조원보다 2.9조원(10.4%) 증가했다.

55개 기업집단 중 자산규모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38.1조원), 현대자동차(25.9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17.8조원), 포스코(17.0조원)의 순이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55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109.0%로 10년 53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 115.8%보다 6.8%p 감소했으며, 55개 기업집단 중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업집단은 10개로 전년도 14개보다 4개 집단이 감소됐다.

공기업집단의 부채비율 167.2%이 민간집단 94.6%보다 높게 나타났고, 민간집단은 전년 103.8%보다 9.2%p 감소된 반면 공기업집단은 전년 159.9%보다 7.3%p 증가했다.

그리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5개 기업집단의 평균 매출액은 22.6조원으로 2010년 53개 기업집단의 평균 매출액 19.2조원보다 3.4조원(17.7%) 증가했다.

매출액이 많이 증가한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34.4조원), 삼성(31.8조원), 포스코(23.7조원), 현대중공업(17.2조원), 에스케이(16.9조원) 등의 순이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대비 상당수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5개 기업집단의 평균 계열회사 수는 28.3개로 2010년 53개 기업집단의 평균 계열회사 수 23.8개보다 4.5개(18.9%) 증가했다.

계열회사 수가 많은 집단은 에스케이(86개), 삼성과 롯데(78개), 지에스(76개)의 순이며,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21개), 롯데(18개), 포스코(13개), 에스케이·삼성·씨제이(각 1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에 지정된 5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들은 임원·이사회 등 운영현황, 계열회사·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을 통한 기업집단 감시·규율 강화차원에서 공시사항 등을 점검하고, 주식 소유 현황(6월 말), 채무 보증 현황(8월), 지배구조 현황(9월) 등을 분석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석유가격 태스크포스 활동결과 발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 내놔

정부는 4월 6일 ‘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지난 1월 13일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구성·운영해 온 석유가격 태스크포스의 논의결과와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석유가격 태스크포스의 분석결과, 현재 정유사 가격결정방식은 국제제품가 방식으로 정유사는 환율을 반영한 ‘국제제품가격(MOPS)’에 관세·부과금, 유통비용, 이윤을 더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영업단계에서 국내 시장상황을 반영해 가격을 추가적으로 조정하고 있었다. 석유제품은 통상 30~45일 전 선적인 원유로 생산하므로 국제유가 상승기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도입한 원유로 생산하기 때문에 원유가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할 경우 국제제품가 방식보다는 석유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국제제품가 방식이 국내 수급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석유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 가격결정방식에 한계가 있으므로 석유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고, 근본적으로는 국내 석유제품시장 개선을 통해 국내 수급요인을 반영하는 국내가격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가격 비대칭성에 관해 소비자들은 국제유가에 비해 국내유가가 더 오르고 덜 내린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는데, 비대칭성을 국제유가(원유가와 제품가)가 오를 때의 국내유가 조정 폭과 내릴 때의 국내유가 조정폭이 상이한 현상으로 정의했다. 분석결과, 분석기간 중 항상 비대칭성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비대칭성이 나타난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 2010년 정유사 가격은 국제휘발유보다 38원/ℓ(주 평균 0.73원/ℓ) 주유소 가격은 29원/ℓ(주평균 0.54원/ℓ) 더 인상했다. 비대칭성 발생원인은 경쟁정도, 사업자와 소비자의 행태 등 다양하게 분석됐으며,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감시를 강화해 비대칭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부는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방안으로 석유제품의 가격공개제도를 확대해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우선 금년 4월까지만 공개하기로 했던 정유사 등 석유사업자의 판매가격 공개시한을 2014년 4월까지 3년 더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현재 공개되고 있는 정유사의 판매가격은 모든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체 평균가격이지만 향후에는 대리점과 주유소 등 판매대상별 각각의 평균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공개되는 석유제품의 범위에 LPG(액화석유가스)까지 포함시켜 앞으로는 LPG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도 공개하게 된다.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현재 6%에 불과한 원가절감형 자가포일 주유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유소의 정유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등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해 소비자 가격 인하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4개 정유사의 과점체제라는 현실은 석유제품의 공급뿐

만 아니라 유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근 독립폴로 자리 잡은 농협이 NH-OIL폴에 이어 제6의 자가폴 주유소 설립을 지원하고, 자가폴 주유소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자가폴 주유소 협의회' (가칭)를 설립해 구심점을 구축하고 이들의 공동구매가 가능토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자가폴 주유소 활성화 등 경쟁촉진을 위해 자가폴 주유소를 포함한 전체 주유소 대상 신용카드 위주로 주유할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의 수급상황을 반영해 석유제품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국내 석유제품 거래시장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석유제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2년 말까지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을 검토하게 된다.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수직적인 거래관행을 깨고 많은 석유사업자들이 석유제품 거래시장에 참여하도록 전자상거래 참여시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와 법적기반 수립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석유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제유가 상승기에 정유사는 원가절감 및 유통비용절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셀프주유소 확대, 가격표시판제도 준수, 유사석유 추방 등 공정한 유통시장을 선도할 필요가 있으며, 서민 난방연료 가격 인하, 사회공헌활동의 내실화 등 석유산업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등 소비자와 진정한 소통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격의 비대칭성, 석유가격 안정화 노력, 사회공헌활동 등을 포함한 정유사별 '사회적 책임경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정 정유사폴 주유소가 혼합판매와 같은 별도의 표시 없이도 타 정유사 제품 또는 혼합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정유사 폴사인과 판매제품의 일치의무제도를 완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유사간 석유제품의 품질차이 유무를 조사하고, 외국사례 조사와 국내유가 및 석유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비자단체와 정유업계 및 주유소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의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유가추이를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등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유가인상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 수립하고, 한국석유공사가 도매업 등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방안 등 국내 유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투자상품 약관심사 기준 제정·시행

약관심사 범위와 원칙을 예시 통해 쉽게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약관 심사의 효율성·일관성을 제고하고, 금융투자업자·협회 등이 약관 제·개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가이드라인」을 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년간 공정위가 금융위에 대해 시정 요청한 약관 사례들과 정책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상품의 특성과 구체적인 불공정 약관 사례를 기초로 작성된 특정 분야에 관한 최초의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이다. 기존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보충하는 심사지침으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약관심사지침」 밖에 없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의 심사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명칭은 약관이 아니지만 계약 내용의 포함 여부에 따라 약관으로 볼 수 있는 투자설명서나 계약권유문서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약관심사의 범위와 원칙을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계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면 고객에게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 등 불공정 약관조항의 유형별로 심사기준과 적용법조,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도 심사할 예정이어서, 심결례가 축적되면 향후 금융투자업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업을 아우르는 공통된 가이드라인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광역지자체 소비자행정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 위한 추진과제 발굴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부산광역시에서 공정위 및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소비자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정위가 올해 수립하게 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주요항목으로 포함되는 지역 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자 했다. 과제 발굴은 소비자교육, 소비자정보 제공, 소비자 안전 확보업무, 소비자 상담·피해 구제 등 소비자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지역 소비자행정 분야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 그리고 강원도로 하여금 추진사례를 발표해 다른 지자체가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 소비자행정 담당자들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내용 전반을 확인해 앞으로의 업무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 현장밀착형 정책수립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정책협의회 개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위한 정책방향 설명 및 건의사항 수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11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현장밀착형 정책 수립을 위해 중소기업대표 39명과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수 위원장은 “극소수의 대기업과 절대다수의 중소기업으로 이원화된 산업구조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의 튼튼한 허리역할을 하여야 하고 작지만 강한 기업, ‘히든 챔피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동반성장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근 공정위가 4월 8일 입법예고한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금형인력 스카우트, 백화점의 불공정행위 등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정당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애로·건의사항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애로·건의사항과 위원장의 답변 요지를 살펴보면, 먼저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조정신청기간 30일, 업종별 원자재 비중 및 상승폭 차등 적용방안 등의 제시된 의견은 물론 입법예고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단체,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시행령(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금형기술센터를 설립해 중소기업의 금형인력을 무리하게 스카우트해 경영에 애로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스카우트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식 및 행태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판촉비용 전가, 판매사원 차출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되어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공정위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하기로 했다.

● “공정위의 개정 여신 표준약관은 정당”, 법원 최종 확인

은행 대출시 저당권 설정비용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이 4월 6일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부채 등과 관련해 공정위가 2008년에 마련한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출 거래시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는 하는 등으로 여신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해 은행에게 사용을 권장하자, 전국은행연합회 등 16개 은행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가 위법하다고 일부 패소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의 판단이 미진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결국, 서울고법은 지난 4월 6일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공정위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

법원은 개정 전 약관조항이 고객과 은행 중 누가 부담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항 자체만을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거래관행에 비춰볼 때 불공정하기 때문에 부담주체를 명확하게 한 개정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의 여신 관련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비용성격에 따라 부담주체(은행 또는 고객)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저당권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등록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설정자가 부담, 기타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은행과 채무자·설정자가 50%씩 분담하게 된다.

다만,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설정자가 부담한다.

공정위의 시중은행에 대한 정당한 표준약관 권장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이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는다면 실제 사용하는 약관이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취해진다.

● 시정조치 사후 이행 확인절차 명확화

이행 확인을 위한 구체적 절차 신설해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확인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조치 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4월 22일 마련하고, 향후 사건절차규칙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완료기간이 정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이행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이행 확인에 대한 내부통제수단 및 시정조치 불이행시 독촉규정을 마련하고 시정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상시점검체계가 구축된다.

다만, 사건절차규칙 개정 전에는 개선사항을 문서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위원회는 시정권고, 시정요청,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현행 사건절차규칙 제64조는 시정명령 등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행 확인절차와 독촉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이행확인절차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행확인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시정조치 이행 완료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조사공무원은 이행완료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정조치 이행 완료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이행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상 이행 완료일 후 1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행 확인에 대한 내부통제수단도 마련했는데, 조사공무원은 시정명령 등에 대한 이행 확인을 한 경우는 이행 여부를 검토해 심사관 소속 각 과장 또는 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2차(최장 60일)에 걸쳐 독촉하고 불이행시 고발하며, 주기적으로 감사실에서 이행 확인 여부를 감사하게 된다.

● 공정위 창립 30주년 기념, 30년간 '30대 사건' 선정

사회·경제적 파급력 크거나 기념비적 중요 사건 설문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창립 30주년에 즈음해 그동안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중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30대 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선정한 30대 사건은 △ 법률적으로나 법집행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 △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건 △ 법해석·적용의 중요한 기준을 정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사건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전체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120개 후보사건을 선정하고, 내부 전담 직원 및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 재검토를 거쳐 최종 30개 사건이 선정됐다고 공정위는 소개했다. 선정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9건과 불공정거래행위 7건 등이 선정됐다.

30대 사건 대부분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24건, 80%)이며, 하도급법(2건)과 가맹사업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및 표시·광고법(각 1건)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공정위 설립 이후 30년간 최초의 과징금 부과(6개 정유회사 담합 건), 최초의 역외적용(흑연전극 봉 담합 건), 단일기업 최대 과징금(켈컴 건), 단일사건 기준 최대 과징금(LPG 담합 건), 최장 담합기간(설탕 담합 건), 최대 소송 참가인원(교복 담합 건) 등의 의미가 부여된 사건들이 다수 선정됐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금액 기준으로 상위 5대 사건인 LPG 담합(6,689억 원), 켈컴 독점력 남용(2,731억 원),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1,247억 원), 시내전화사업자 담합(967억 원), 5개 정유사 군납유류 입찰담합 건(828억 원)도 모두 포함됐다.

공정거래제도 도입 이후 초기 20년간 법집행 사건 중 6건(담합 2건, 불공정행위 4건)이 선정됐고 24건은 최근 10년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초반기에는 교육 등을 통한 제도 홍보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에 법집행의 중점을 둔 결과로 소수의 사건만 선정된 것이며, 최근에는 '시장경제의 암(癌)'이라고 할 수 있는 카르텔 등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해 다수 사건이 선정됐다.

30대 사건을 업종별로 보면 60%(18건)가 제조업에 집중됐으며, 그 밖에 통신, 보험, 도·소매, 여행서비스 등 각 업종별로 골고루 선정됐다.

공정위는 5월에 30대 사건에 대한 평석집 2,000여 부를 발간해 학계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며, 8월 중 영문판도 발간해 외국 경쟁당국 등을 대상으로 공정위의 법집행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2011년 4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4월보다 5개사 감소한 1549개

2011년 5월 2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55개의 소속회사 수는 1,549개로, 지난달 1,554에 비해 편입 13개와 제외 18개를 포함해 5개 회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4월 중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

기업집단	2011. 4. 5.	편 입				제 외							증감	2011. 5. 2.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신축 분리	지정 제외	기타	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55개)	1,554	8	5	-	13	11	1	3	-	-	3	18	-5	1,549

편입내역을 살펴보면 11개 집단에서 회사 설립, 지분 취득 등으로 총 13개 소속회사가 증가했다. △ 회사 설립 (삼성 : 에스엠피(주), 에스케이 : 에스케이바이오팜(주) 등 8개 △ 지분 취득 (롯데 : (주)엔허브, 엘에스 : (주)선위 등 5개였다.

제외내역을 살펴보면 12개 집단에서 계열사 흡수합병, 지분 매각 등으로 총 18개 소속회사가 감소했다. △ 흡수 합병 (엘지 : 엘지폴리카보네이트(주), 지에스 : 서림홍업(주) 등 11개 △ 지분 매각 (대한전선 : (주)무주리조트) 1개 △ 청산 종결 (한진 : 그린마린(주), 대림 : 웨텍코프(주) 등 3개 △ 기타 (현대자동차 : 미래세움제이치(주) 등 3개였다.

경고·무혐의 사유 구체적으로 적시한 표준문안 마련·시행

경고·무혐의 사건 등에 대한 피조사업체·신고인 권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일 피조사업체와 신고인의 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경고, 무혐의 통지 등에 대한 표준문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고,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유 기재 정도나 통보내용이 담당자별로 상이해 피조사업체의 예측 가능성과 신고인의 권리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표준문안 시행에 따라 심사관이나 공정위가 경고, 무혐의, 심사불개시, 심의절차종료, 조사중지 등을 할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 피조사업체나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경고, 무혐의, 심사불개시, 심의절차종료, 조사중지를 하는 경우는 각 행위별 위법성 판단 및 적용 법조뿐만 아니라 각 행위별 처리결과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피조사업체 및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 인사동향 (2011. 3. 11. ~ 5. 3.)

3. 11.

- ▶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주사보 김현중 전산주사에 임함.

3. 15.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송상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파견근무 연장을 명함 (파견연장기간:2011.3.15.~2012.3.14.).
-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서기관 한철기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지원근무를 해제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장민희 복직을 명함.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3. 21.

- ▶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행정주사보 유승완 금융위원회 전출을 명함.
- ▶ 금융위원회 행정주사보 이재성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근무를 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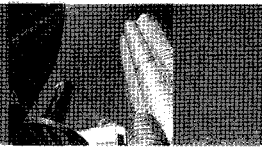
3. 22.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실무수습) 7급 행정직 실무수습원 김준홍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근무를 명함.

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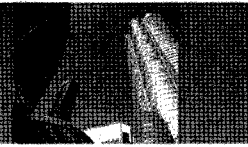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이영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최병국 부위원장실 근무를 명함.
- ▶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조선영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행정사무관 박정웅 감사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행정사무관 한경중
- ▶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 행정주사 김경배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이준우
- ▶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행정주사보 이창욱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주사 김환기 종합상담과 근무를 명함.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 행정사무관 신현대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1.3.25.~별도발령시까지).
- ▶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행정주사 백성하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행정주사 김미영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1.3.25.~2011.4.30.까지).
- ▶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행정주사 정문홍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3.25.~2011.4.30.까지).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1.5.1.~별도발령시까지).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행정사무관 박희순 심판관리관실 경쟁심판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1.3.25.~별도발령시까지).
- ▶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행정주사 이상욱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심판관리관실 경쟁심판담



- ▶ 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3.25.~별도발령시까지).
- ▶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행정주사 김영석
심판관리관실 경쟁심판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행정사무관 서영채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서기관 배찬영
- ▶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서기관 왕일상
- ▶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행정사무관 김동명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행정주사 이윤기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
실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3.25.~별도발령시까지).
- ▶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행정주사 김덕이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서기관 김신영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행정사무관 김득웅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시장감시
국 서비스업감시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1.3.25.~2011.3.30.까지).
- ▶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행정주사 정창석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전산사무관 박소영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심판관리관실 경쟁심판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음잔디
- ▶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행정사무관 노태근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근무를 명함.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주사 박영중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지
원근무를 명함(기간:2011.3.25.~별도발령시까지).
- ▶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서기관 이승규
- ▶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행정주사 박진성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근무를 명함.
- ▶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이상협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재조하도급과 지원근무를 해제
함.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근무를 명함.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 행정주사 이시완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지
원근무를 명함(기간:2011.3.25.~별도발령시까지).
- ▶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김주환
- ▶ 운영지원과 행정주사 임대중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근무를 명함.
-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행정주사 변동영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근무를 명함.
- ▶ 운영지원과 서기관 박기홍
- ▶ 부위원장실 행정사무관 조의제
- ▶ 운영지원과 행정주사보 김용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근무를 명함.
- ▶ 기획조정관실 규제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현주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근무를 명함. 기획조
정관실 규제법무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1.3.25.~2011.4.22.까지).
- ▶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행정주사 윤광욱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경
제분석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1.3.25.~별도발령시까지).
- ▶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행정주사 문미향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
정보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3.25.~별도발령시까지).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이주옥
복직을 명함.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근무를 명함.
- ▶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서기관 강도영
- ▶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전재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근무를 명함.
- ▶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행정주사보 박준영
특수거래시장 전화화T/F 근무를 해제함.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근무를 명함.
-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행정사무관 우명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1.3.25.~별도발령시까지).

- ▶ 심판관리관실 경쟁심판담당관실 행정주사 한성재
-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 송병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근무를 명함.
- ▶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서기관 한용호
- ▶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행정주사 임경순
- ▶ 운영지원과 행정주사보 임경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근무를 명함.
- ▶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서기관 황민호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근무를 명함.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3.25.~2011.4.1.까지).
- ▶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주사 이철웅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3.25.~별도발령시까지).
- ▶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임덕용
- ▶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주사 이영진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근무를 명함.
- ▶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행정사무관 류용래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근무를 명함.
- ▶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유규형
- ▶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최홍수
- ▶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희재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근무를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장민희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근무를 명함.
- ▶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행정사무관 유영욱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근무를 명함.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1.3.25.~2011.5.31.까지).
- ▶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서기관 오동욱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3.25.~별도발령시까지).
- ▶ 종합상담과 행정주사 이진열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근무를 명함.
- ▶ 운영지원과 행정주사보 노현재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 근무를 명함.
-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행정주사 류호형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3.25.~별도발령시까지).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행정사무관 최봉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근무를 명함.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1.3.25.~별도발령시까지).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원성연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근무를 명함.
-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서기관 장상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사무관 류태일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육아휴직)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기간:2011.3.25.~2011.9.24.).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 행정사무관 박세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근무를 명함.
- ▶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행정주사 박윤정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근무를 명함.
- ▶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경제분석과 행정사무관 오석정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 ▶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정원선
- ▶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행정주사 최갑석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근무를 명함.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행정주사 조석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1.3.25.~2011.4.8.까지).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행정사무관 이원두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에 보함.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행정사무관 조현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에 겸임함.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 함운용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근무를 명함.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 이효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근무를 명함.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 안유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 나경복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주사 김현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행정주사 박재생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기능8급(운전원) 정상충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행정사무관 이용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에 겸임함.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 행정사무관 이상로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에 겸임함.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 안광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근무를 명함.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 최경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 행정주사 한성호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근무를 명함.
-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행정사무관 김진석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에 겸임함.
-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 손영기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보 석태웅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보 손민경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근무를 명함.
-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주사보 최 호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시설주사보 장재혁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근무를 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상준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정창욱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3항에 의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
원회 파견근무 연장을 명함
(파견연장기간:2011.4.1.~2012.3.31.)

- ▶ 경쟁제한규제개혁직업단 행정주사보 김양수
헌법재판소 진출을 명함.

▶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현수

공정거래 30년사 편찬T/F 근무를 해제함. 서울지방공정
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경제분석과 행정주사 신규원

공정거래 30년사 편찬T/F 근무를 해제함. 운영지원과 근
무를 명함.

▶ 김은미

계약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심판관리관에 보함
(기간:2011.4.6.~2013.4.5.)

▶ 공정거래위원회 토목사무관 정재득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서기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신정은

기획조정관실 규제법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4.14.

- ▶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기능8급(운전원) 정태정 기능7급(운전원, 근속승진)에 임함.

4.26.

- ▶ 행정안전부 전산사무관 이다애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04.26.~별도발령시까지).
- ▶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정보미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근무를 명함.
- ▶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근무를 명함.
- ▶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김중호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근무를 명함.
- ▶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김대영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근무를 명함.
- ▶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박현규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근무를 명함.
- ▶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김수현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근무를 명함.
- ▶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김유진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04.26.~별도발령시까지).
- ▶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윤지원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근무를 명함.

6.3.

-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부이사관 여형동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통령.
- ▶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서기관 홍용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에 보함.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서기관 윤용규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에 보함.
-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서기관 이경만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류태일
복직을 명함.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05.03.~별도발령시까지).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이효영
복직을 명함.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경제분석과 근무를 명함.

